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1년 11월 일
발 의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성주군 참외산업의 발전을 위해 참외덩굴 소각근절, 성주참외 공동브랜드 사용, 참외 자조금납부 등 참외재배 농업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고, 이에 대한 불이행 작목반 또는 농업인에 대한 참외관련 보조 사업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농업인 준수사항 신설 (안 제6조제1항)

- 배수로 등 공공수역내 발효과 투기근절
- 참외덩굴 소각근절
- 성주참외 공동브랜드 사용, 참외 자조금 납부
-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.

나. 농업인 제재규정 강화 (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, 제5항)

- 1회 위반 시 : “경고”를 “1년간 보조사업 제한”으로 변경
- 2회 위반 시 : “익년도 지원중단”을 “2년간 제한”으로 변경
- 3회 위반 시 : “익년도부터 2년간 지원중단”을 “3년간 제한”으로 변경
- 생산자단체는 그 구성원, 농업인은 그 세대원에게 연대제재
- 제재대상 보조사업의 종류와 제한 범위는 참외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, 제48조 및 제50조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

(1) 입법예고 결과 (2011. 9. 8~2011. 9. 27) : 의견 있음

의견제출자	제출의견	조치내용	사　유
성주군의회 사무과장 이 병 식	○ 제6조 제1항6호 “기타 군수가 시행하는 역점 시책사업의 농업인 협조사항”을 ⇒ “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농업인 준수사항”으로 한다.	**반영**	군수가 시행하는 역점 시책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차후 규칙으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.
환경보호과 수질관리담당 김 은 희	○ 제6조 제1항에 “퇴비 무단방치 근절” 항목 추가	**미반영**	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제50조 제9호에 의거 규제, 벌칙가능.
	○ 제6조 제1항에 “배수로 등 공공수역내 발효과 투기근절” 추가	**반영**	환경오염 및 성주참외 이미지 실추 예방을 위해 참외농업인 주요 준수사항 으로 규정함이 타당함.
성주군녹색실천 연대회장 전 한 식	○ 제4조 제2항3호 “산・들풀・참외덩굴 등과”를 ⇒ “산・들풀・참외덩굴 (농산부산물)등과”로 한다.	**반영**	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해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생산이 타당함.
	○ 제6조 제1항4호 “참외덩굴 소각근절”을 ⇒ “참외덩굴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 소각 및 농수로 쓰레기 투기근절”로 한다.	**미반영**	쓰레기 소각 및 투기는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3 제2항에 의거 규제,과태료처분 가능.

(2) 제181회 성주군 조례・규칙심의회 결과 (2011. 10. 13) : 재심의

심의안	심의결과	수정안
○ 제6조 제1항7호 7.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농업인 준수사항	문구배열 검토	○ 제6조 제1항7호 **7.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.**
○ 제6조 제2항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할 수 있다. 1. 1회 위반 시 : 1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 2. 2회 위반 시 : 2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 3. 3회 위반 시 : 3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	②항의 “참외관련 보조사업”이라함은 제재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 기관의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 좀더 구체적인 명문화가 필요함	⑤항 추가신설 **⑤제재대상 보조사업의 종류와 제한 범위는 참외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.**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참외산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참외산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주군 참외산업발전에 관한 조례”를 “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 중 “산・들풀・참외넝쿨”을 “산・들풀・참외덩굴(농산부산물)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규격박스”를 “규격박스(공동디자인 포함)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배수로 등 공공수역내 발효과 투기근절
5. 참외덩굴 소각근절
6. 성주참외 공동디자인 사용, 참외 자조금 납부
7.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다음각 호와 같이 제재할 수 있다.

1. 1회 위반 시 : 1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
2. 2회 위반 시 : 2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
3. 3회 위반 시 : 3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

③ 제1항의 경우는 각 불이행 행위를 1회로 본다.

④ 제2항의 경우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에게, 농업인인 때에는 그 세대원에게 연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⑤ 제재대상 보조사업의 종류와 제한 범위는 참외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3호의 본문 중 “군의회의원”을 삭제하고, “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”을 “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”으로 하며, 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”를 “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”을 “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기관 단체장 및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성주군 참외산업발전에 관한 조례	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
제4조(고품질 참외 생산) ① (생 략)	제4조(고품질 참외 생산) ① (현행과 같음)
②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.	②----------.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산・들풀・참외넝쿨 등과 축산분뇨를 이용한 퇴비생산으로 자연순환 농업 실천과 생산비절감	3. 산・들풀・참외덩굴(농산부산물) ----------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제5조(고품질 참외 출하) ① (생 략)	제5조(고품질 참외 출하) ① (현행과 같음)
②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출하하는 참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 하여야 한다.	②----------.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규격박스 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	3. 규격박스(공동디자인 포함) ---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준수사항 및 제재) ①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의 참외생산과 유통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	제6조(준수사항 및 제재) ①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배수로 등 공공수역내 발효과 투기 근절
<신 설>	5. 참외덩굴 소각근절
<신 설>	6. 성주참외 공동디자인 사용, 참외 자조금 납부
<신 설>	7.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에서 정한다.
②군수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할 수 있다. 1. 1회 위반 시 : 경고 2. 2회 위반 시 : 참외관련 보조사업 익년도 지원 중단 3. 3회 위반 시 : 참외관련 보조사업 익년도부터 2년간 지원 중단	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할 수 있다. 1. 1회 위반 시 : 1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 2. 2회 위반 시 : 2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 3. 3회 위반 시 : 3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
<신 설>	③ 제1항의 경우는 각 불이행 행위를 1회로 본다.
<신 설>	④ 제2항의 경우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에게, 농업인 인때에는 그 세대원에게 연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<신 설>	⑤ 제재대상 보조사업의 종류와 제한범위는 참외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11조(구성 및 임기 등) ① (생 략)	제11조(구성 및 임기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·임명한다.	②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위 원 : 군의회의원, 농협군지부장, 참외원예농협장, 지역농협장, 농업인단체장, 참외생산자, 농산물유통전문가, 과채류시험장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, 농정과장 및 그 밖에 참외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	3. 위 원 : 농협군지부장, 참외원예농협장, 지역농협장, 농업인단체장, 참외생산자, 농산물유통전문가, 과채류시험장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, 농정과장 및 그 밖에 참외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
③ 농협군지부장, 참외원예농협장, 과채류시험장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,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	③ ----------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군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기관 단체장 및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.	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기관 단체장 및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.
⑥·⑦ (생 략)	⑥·⑦ (현행과 같음)